

충청북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복순

# 충청북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조성태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5년 1월 10일

○ 회부일자 : 2025년 1월 13일

3. 제안이유

- 최근 건축물의 해체공사 과정에서 붕괴 사고로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건축물 해체공사는 해당 건축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현장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족한 현실임.
- 이에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북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안전관리 등(안 제4조)

- 건축물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요령 등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전교육(안 제5조)

-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 등 해체공사관계자에 대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전조치 등(안 제6조)

- 누구든지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때에는 기술자문 등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고, 도지사는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관계기관 협력 등(안 제7조)

-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하고,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는 건축물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령 등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고, 해체공사시공자는 해체공사 시행 전 건축물 해체 허가 또는 신고사항이 기재된 표지판을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5조는 해체공사 관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시장·군수가 실시하는 안전교육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해체공사관계자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작업 관련 특별교육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도모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6조에서는 해체공사 중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현장을 발견한 경우 도지사에게 기술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음.
- 안 제7조에서는 해체공사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음.
- 본 조례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선언적 의미를 조례에 담아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목적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30조 및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등에 따라 건축물 해체,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의 허가권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인 점과 상위법에 안전관리, 안전교육, 안전조치에 대한 별도의 위임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시·군과 충분한 협의와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